

## 1. 자립수당

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**매월 30만원**을 지급하여 **경제적 부담을 완화**하고 **성공적 자립에 기여**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

### 대상자



-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
  -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

**동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.**

**예시**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→ A아동양육시설(6개월) + B공동생활가정(1년 7개월) = 2년 1개월 인정  
\*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

- 단,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(「난민법」 상 난민인정자 포함)해야 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.

### 지급금액



- 보호종료아동 1명당 **매월 30만원**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지급일은 **매월 20일**(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)입니다.

### 신청기간



-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신청방법



#### ① 방문신청

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
**단!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,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.**

-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: **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신청
-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: 본인 또는 대리인이 **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신청
- \*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.

####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

**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**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\*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
### 신청서류



#### ① 필수 제출서류
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종

#### ② 추가 제출서류

-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
- 대리신청 시 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」 및 대리인 신분증
-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'보호종료 확인서' 요청 가능
- ※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,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2.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

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·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

### 대상자



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
  -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(3,501,813원) 인 자

### 신청지역



- '19년에는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충남, 전북, 전남 7개 시·도가 참여합니다.

### 지원내용



- ① 주거지원
  -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(원룸형 위주) 240호를 지원합니다.
  -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(2년)동안 보증금·월세는 무료이며, 수도·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.
  - 관리비 미납,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내에 예치금(100만원)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,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.
- ② 주거환경조성
  - 세탁기·냉장고·가스레인지·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·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
-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
  -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·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, 진학·직업훈련·생활·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.
  -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. (연 최대 240만원)
  -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·내방·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### 신청기간



- 2019년 4월 1일~4월 30일
  - ※ 각 지역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하며, 연장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

### 신청방법



-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### 신청서류



- ① 필수 제출 서류
  -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
  - 자기소개서
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- 보호종료 확인서
    - ※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
 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종
    - ※ 우편 신청 시,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
- ② 추가 제출 서류
  - 아동자립지원단장, 시설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장, 아동복지협회장, 그룹홈협의회장, 시·도, 시·군·구청장 등의 추천서(선택사항)
    - ※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,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.